

[한국실업축구연맹 구단관리 규정]

제1조 [구단의 자격요건]

① 내셔널리그 참가 구단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.

- 1) 국내법을 근거로 설립한 독립 법인형 구단 권장
- 2) 연고지 (시,군,구 권역)
- 3) 연고지내 경기 규정에 부합하는 경기장 보유
- 4) 사무국 (권장)
 - 가. 상근임원
 - 나. 사무국장 (행정총괄 실무자)
 - 다. 사무국 구성 및 업무분장, 분야별(재무, 안전, 미디어, 마케팅 등) 담당자 최소 1인 이상 필수, 총원 5인 이상 권장
- 5) 연맹 통일계약서를 통해 연맹에서 정한 최저연봉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등록된 선수를 최소 20명 이상(외국인선수 포함)보유하여야 한다. 외국인선수는 최대3명으로 한다.
- 6) 대한축구협회 등록 지도자(감독, 코치 등 - AFC A급 이상), 의무트레이너 보유
- 7) 유소년클럽시스템 권장
 - 가. 연령별 클럽 1개 이상 보유
 - 나. 유소년 육성팀 1개 이상 협회 등록
 - 다. 유소년육성책임자 1인 이상 (AFC A급 이상) - 클럽감독 겸직 가능
- 8) 연간 예산 및 결산 내역
- 9) 기타 연맹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
- 10) 입장료 유료화 권장

제2조 [가입]

① 연맹에 신규로 참가하는 모든 구단은 내셔널리그 구단으로 가입된다. 단, 팀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어 팀명 및 연고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연맹 정관 및 규정에 의거하여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최종 참가를 허락한다.

② 신규구단은 다음에 절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.

- 1) 회원가입신청서
- 2) 구단 조직도
- 3) 예산서
- 4) 연고지 협약서
- 5) 경기장 사용 협약서
- 6) 재정지원(보증)확인서
- 7) 정관 및 구단 내규
- 8) 창단 및 운영주체 명단
- 9)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임감, 주주명부 (법인인 경우)
- 10) 창단 및 1년차 사업계획 (창단 이후 5년간 재무계획)
- 11) 홈 경기장 시설현황

③ 연맹은 회원가입신청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사한다.

- 1) 구단의 경영상태, 중장기 구단운영계획, 재정확보계획, 사무국 구성계획, 유소년클럽시스템 운영계획(유소년 클럽 운영시 제출 - 권장사항)
 - 2) 지역과의 협력관계 및 홈 경기장, 연습구장 등에 관한 현지 조사
 - 3) 구단 운영주체자, 담당자 및 연고지 행정당국 책임자 면담 조사
 - 4) 기타 회원가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
- ④ 가입신청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맹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.
⑤ 탈퇴구단의 재가입은 신규구단으로 간주한다.

제4조 [구단의 승격 및 강등]

① 구단은 연맹 및 협회에서 정한 디비전 시스템의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, 별도의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한다.

제5조 [가입금 및 연회비]

① 연맹소속 구단은 아래의 가입금 및 연회비를 납부한다.

가. 가입금

- 1) 가입금 : 1억원
- 2) 축구발전기금 : 2억원

나. 연회비 : 5천만원

- ② 가입금은 2006년 이후 연맹에 가입한 구단에게 적용되며, 새로이 가입하는 연도의 정기총회 전일까지 납부한다.
- ③ 연회비는 매년 연맹이 지정하는 기일이내 납부한다.
- ④ 가입금과 연회비 납부가 지연될 경우, 총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의 권리가 제한되며, 연맹 주최·주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.
- ⑤ 구단은 가입금과 연회비 외에 총회에서 별도의 납부금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으며, 결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⑥ 구단이 연맹에서 탈퇴 또는 제명되는 경우에도 구단이 납부한 가입금, 회비, 기타 각종 납입금 등은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.

제6조 [탈퇴]

- ① 구단이 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탈퇴 희망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탈퇴 사유를 명시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하며,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.
- ② 리그 도중에는 탈퇴할 수 없으며, 상기 1항의 절차에 위배하여 탈퇴할 경우,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구단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의 양도 등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.
- ③ 상기 2항의 제한된 권리는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.
- ④ 탈퇴구단은 탈퇴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리그 재가입이 불가능하며, 이후 리그 재가입을 신청할 경우, 신규구단 가입 기준으로 승인절차를 진행한다.

제7조 [연고지]

- ① 연고지는 연맹 회원가입신청에 따라 구단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이사회,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.
- ② 연고지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다.
- ③ 상기 2항에도 불구하고 연고지 변경이 될 경우 신규구단의 창단과 동일 서류를 통해 연고지 변경 6개월전에 신청하고 연맹 총회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된다. 단, 시즌 도중 연고지 변경은 불가하다.

제8조 [부칙]

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연맹 및 협회, AFC, FIFA의 정관, 규정, 그리고 규정에 준하는 결정사항에 따른다.